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2. 16 선고 2021가단96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

담당변호사 고경우

변 론 종 결 2021. 11. 4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10,523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2. 1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2007. 2. 13. 차용금액 65,700,000원, 변제기 2007. 3. 31.까지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, 피고의 형인 C은 피고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피고는 원고가 위 가.항 기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차7959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이에 위 법원은 2010. 4. 15. ‘원고는 피고에게 109,086,000원 및 그 중 65,700,000원에 대하여 2010. 4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지급명령(이하 ‘이 사건 지급명령’이라 한다)을 발령하였으며,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. 4. 21.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0. 5. 7. 확정되었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2020. 2. 11.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,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(부산지방법원 2020가단4580호)를 제기하였다. 그리고 위 법원은 2021. 1. 20.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8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원고와의 금전거래가 없었고,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. 원고는 변제의 의무가 없음에도 강제경매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E로부터 105,000,000원을 급하게 차용하여 그 돈으로 피고가 요구한 돈을 지급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돈 및 이자 포함한 110,523,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민법 제741조는 “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”라고 정하고 있다.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

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).

2) 살피건대,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4580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와 피고 및 회유, 강요에 의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, 위 법원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, 다만 위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C 및 E의 대위변제로 전부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점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에 대하여 '혐의없음'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점, 원고는 불기소 처분 이후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은정